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746호
- 다. 제출일자 : 2019. 5. 31.
- 라. 회부일자 : 2019. 6. 0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안전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안전 특별회계	828,244	840,398	840,112	840,053	7	52	99.9

- 세입예산현액은 8,403억 9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8,401억 1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400억 53백만원을 수납하고, 7백만원은 결손처분, 5천 2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644,317	12,154	-	62 (-62)	2,415 (-2,415)	-	1,656,471	1,639,468	4,007	-	4,007	5	12,991 (0.8%)
일반 회계	816,073	-	-	-	-	-	816,073	816,073	-	-	-	-	- (0.0%)
특별 회계	828,244	12,154	-	62 (-62)	2,415 (-2,415)	-	840,398	823,395	4,007	-	4,007	5	12,991 (1.5%)

-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160억 73백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8,403억 9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1조 6,564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9%인 1조 6,394억 68백만원을 지출하고 0.2%인 40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29억 9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24억 15백만원으로

○ 인력운영비 보수 운영 24억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운영 15백만원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5건에 62백만원으로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부대비 운영 28백만원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운영 3백만원

○ 소방안전지도 운영 공공운영비 12백만원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무관리비 운영 11백만원

○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운영 8백만원.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40억 7백만원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6,564억 71백만원 대비 0.2%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29억 9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6,564억 71백만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8	1,656,471	12,991	0.8%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119억 65백만원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 10억 26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소방안전특별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8	828,244	840,398	840,112	840,053	7	52	99.9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403억 9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8,401억 1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400억 53백만원을 수납하고, 7백만원은 결손처분, 5천 2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37~41)

- 소방안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대비 약 99.9%로 총 2억 87백만원이 감액 징수 결정되었으며 일부세입 중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 혹은 50% 이상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입 대 료	201,299	105,697	105,697	△95,602	△47.5%	서울시 공유재산및물품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감가규정 삭제로 임대 료를 증가하여 추계하 였으나, 특례조항(조례 32조)을 적용하여 감소
기타사용료	17,945	7,151	7,151	△10,794	△60.2%	남산 예장자락 재생공 사 관련 본부 주차장 폐쇄로 주차요금 징수 액 감소 등
기 타 사 업 수 입	35,286	257,663	257,663	222,377	630.2%	타시도 신규임용자과정 (전남소방본부 114명) 등 위탁교육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33,000	89,339	89,339	△243,661	△73.2%	'18년도 평균잔고가 적어 이자수입 감소
기 타 이 자 수 입	26,524	49,537	49,273	22,749	85.8%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추계 대비 평균잔고의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 행 강 제 금	4,533	16,250	16,250	11,717	258.5%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위 약 금	168,264	245,113	245,113	76,849	45.7%	시설공사 및 물품 납품 지체로 인한 위약금 증가
불 용 품 매 각 대	817,000	724,283	724,283	△92,717	△11.3%	차량 불용 추계(139대) 대비 불용차량 대수(76 대) 감소
그 외 수 입	193,433	412,247	412,247	218,814	113.1%	소방청 추진 전국 소방 헬기 보험 통합가입에 따른 기존 헬기보험 해 지(18.8.1.일자)
보전수입 등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2,240,108	1,740,000	1,740,000	△500,108	△22.3%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 자율(1.0%)로 중도상환 자수 감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는 예산액 2억 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6백만원으로 9천 5백만원(47.5%) 감소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의 특례조항¹⁾을 적용시켜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소방재난본부 청사건물 임대 현황

건 물 명	건물층수	임 차 인	임대내역(㎡)			임대기간
			층별	토지	건물	
소방재난본부	지상6층 /지하1층	(주)우리은행 (남산출장소)	1층	98.55	98.55	2019.01.01. ~2019.12.31.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지상4층 /지하1층	은평구청장 (스토어36.5)	1층	116	190.93	2018.11.11. ~2019.11.10.
		은평구청장 (녹번 만화도서관)	1층	58	-	2018.12.20. ~2019.12.19.
		은평구청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4층	565.2 103.42	930.14 170.2	2018.03.26. ~2019.03.25.

-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1천 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백만원으로 1천 1백만원(60.2%)이 감소한 사유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유희공간 대관료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 부설주차장의 경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²⁾’ 공사가 당초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완료에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2019년 5월까지로 연장되어 이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액이 감소하였고,

- 유희공간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광나루안전체험관 다목적실, 은평·구로·서대문소방서, 소방학교 강당 등 5개소를 시민 및 민간단체에 대관하고 있으나, 내부교육의 증가로 인하여 외부이용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 예산 편성 시 내부교육과 유관단체 등의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사용계획을 파악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3천 5백만원 대비 2억 23백만원 (630.2%)이 증가한 2억 5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신규임용자 114명에 대한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비 1억 76백만원이 수납됨에 따른 것임.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 3억 33백만원 대비 2억 43백만원 (73.2%)이 감소한 8천 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결산금액이 2017년 대비 평균잔고가 적어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세출 모(母)계좌³⁾에서 소방기관별 자(子)계좌로 재배정되어 집행처리 되면서 이자 시작일부터 결산일까지 모계좌의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이자가 지급⁴⁾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못하고

[표] 2017~2018년도 세출 모계좌 이자 세부내역

(단위 : 원)

이자산정대상일 회계연도	2017년도			2018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평균잔고	이자금액	이자발생 회계연도	평균잔고	이자금액
전년도.07.01~12.31.	2016	13,592,380,540	251,459,040	2017	2,821,360,540	52,195,170
당해년도.01.01~02.28.	2016	1,340,126,486	24,792,340	2017	675,896,216	12,504,080
당해년도.03.01~06.30.	2016	28,170,810	521,160	2017	9,229,189	170,740
당해년도.01.01~06.30.	2017	2,781,644,865	51,460,430	2018	1,322,616,216	24,468,400
		합 계	328,232,970		합 계	89,338,390

- 기존에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되던 세입과목을 2018회계연도 부터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사례부족에 따른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기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금고와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자발생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3) 모(母)계좌: 공금계좌는 '모(母)계좌-자(子)계좌-손자(孫子)계좌'로 나누어져 있고, 계좌번호는 ① 1601-②회계코드-③기관코드-④해당연도의 끝숫자 로 구성되어져있다. 이 때 ③기관코드가 '000' 이면 모계좌라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소방재난본부(기관코드: 150) 소방안전특별회계(회계코드: 06119)의 세출 자(子)계좌는 '1601-06119-150-8'이다.

4) 1월(전년도 7월~12월), 3월(1월~2월), 7월(1월~6월)

-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액 2천 7백만원 대비 2천 3백만원 (185.8%)이 증가한 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공공요금 이체통장, 국고보조금 수입금통장 등에서 이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기존에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세무과 수입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서울시 세무과 이자로 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동 시스템이 2018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소방관련 국고보조금이 소방재난본부로 직접 입금됨에 따라 이자수입(1,128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의 경우, 예산액 5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천 6백만원으로 1천 1백만원(258.5%) 증가함.
 - 이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자부)」 개정(2016.7월)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예산과목에서 분리되면서 과년도 예산편성내역이나 부과실적이 거의 없어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표] 최근 5년간('18 ~ '14)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18	2017	2016	2015	2014
예산액	4,533	4,000	-	-	-
징수결정액	16,250	8,000	7,600	4,000	2,000
부과건수	5건	4건	4건	2건	1건

-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만원 등 총 5건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한편, 이행강제금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최초의 조치 명령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2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음.
- 위약금의 경우, 예산액 1억 6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7천 7백만원(45.7%) 증가한 2억 45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시설공사 및 물품 납품의 지체로 지연배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임.

[표] 2018년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방관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징수금액	지체일수	비고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타운 119극기훈련시설 설치공사	일반경쟁	941,700	87,380	210	지연배상금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8년 구조장비 동력절단기 등 23종 구매	일반경쟁	154,000	5,667	46	지연배상금
3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감영방지용 구급장비 구매	일반경쟁	81,917	655	10	지연배상금
4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8년 구조장비 저층용 공기안전매트 1종 구매	일반경쟁	360,500	3,461	12	지연배상금
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화재진압대원 특수안전장갑 구매	일반경쟁	496,160	22,228	56	지연배상금
6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홈페이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버 이중화 용역	전자공개	321,900	27,689	66	지연배상금
7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기자재 구매	제한경쟁	221,428	1,417	8	지연배상금
8	소방학교	교육용 구조기자재 구매	제한경쟁	103,670	6,967	84	지연배상금
9	119특수구조단	2017년 소방헬기(AS365N2) 부품 구매	1인수의	16,491	686	52	지연배상금
10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항공구조장비 구매	제한경쟁	82,505	2,442	37	지연배상금
11	광진소방서	운전대원용 보호장비(안전안경) 구매	1인수의	2,480	24	12	지연배상금
12	마포소방서	15인승 승강기 증축공사	전자공개	165,396	3,095	35	지연배상금
13	노원소방서	청사 내진보강 공사	제한경쟁	432,869	3,679	17	지연배상금
14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특수방화복(350착) 구매	조달구매	127,162	4,769	25	지연배상금
1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충전함(21대) 구매	1인수의	415,800	13,638	41	지연배상금
16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충전함(35대) 구매	1인수의	693,000	38,269	69	지연배상금
17	본부 등 15개 기관	피복(활동복, 소방점퍼 등) 납품지연 23건	조달구매	232,148	6,854	평균 50일	지연배상금
18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이동식조명등 구매	제한경쟁	156,181	15,618	-	위약금
19	방재센터	불용차량(행정차량 2호 프라이드) 매각	온비드	5,740	574	-	위약금
합 계				5,011,047	245,112		

※ 전체 지연배상금 17건 중 일반경쟁 7건, 제한경쟁 3건, 전자공개 1건, 수의계약 4건, 조달구매 2건

- 지연배상금 건 중 지체일수가 210일인 ‘소방행정타운 119극기훈련시설 설치공사’는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대상사업(소방행정타운 건립)으로 2017. 4월 전국적인 모래 파동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본관동 골조공사가 계획대비 3개월 지연되면서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 관급자재 반입이 차례로

지연되고, 여름철 우기 시 공사 현장 내 토사유입 피해로 인한 복구기간(1개월)이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 지체일수 84일인 ‘소방학교 교육용 구조기자재 구매’의 경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 납품이 지연됨.
- 이는 2017년 4월부터 신생업체 및 납품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행실적(납품실적) 배점(20점)을 삭제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입찰참여 및 낙찰로 인해 물품계약 체결 후 납품을 못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 단서조항으로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추후 입찰공고부터는 실적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납품을 유도토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체일수가 69일인 ‘안전충전함⁵⁾(35대) 구매’는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대상사업(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으로 안전충전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기준고시의 시행이 연초로 전망되던 것과 달리 2017.6.20일자로 제정되고 2017.8.1.일부터 시행되면서,
- 안전충전함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확인이 2017. 8. 24일 및 9.13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매의뢰 및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업체의 성능확인이 늦어져 최초 납품기한내(2017. 12.18. 35대)에 납품 설치하지 못함에 따라 지연된 것임.
- 한편,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7건, 2017년도 26건과 비교해 2018년도는 17건이 발생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되나,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연배상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최근 3년간('18~ '16) 계약방법에 따른 지연배상금

구분		연도별	합계	2018	2017	2016
계약방법	일반경쟁		24	7	8	9
	제한경쟁		26	3	8	15
	전자공개		1	1	-	-
	수의계약		14	4	7	3
	조달구매		5	2	3	-
합계			70건	17건	26건	27건

5) 호흡용 공기용기 충전 시 폭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안전함

- 불용품매각대는 예산액 8억 17백만원 대비 9천 3백만원 감소한 7억 24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불용차량 추계 대수가 139대에서 76대로 감소⁶⁾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제천화재사고가 계기로 불용 예정이었던 이륜차 대신에 사다리차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이륜차 불용이 59대에서 5대로 감소하였고,
 - 구급차가 페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으로 무상양여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구급차불용이 30대에서 5대로 감소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 이처럼 예산편성 후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산편성 당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은 1억 93백만원 대비 2억 19백만원 (113.1%)이 증가한 4억 12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청 추진 전국 소방헬기 통합보험가입에 따라 기존 헬기보험 해지 환급금이 5천 6백만원, 과오납 및 정산 환

6) 탱크차 : 추계 16대 → 불용 13대 - 징수완료 6대, 무상양여 4대, '19년 징수 3대
 구급차 : 추계 30대 → 불용 34대 - 징수완료 5대, 무상양여 26대, '19년 징수 3대

급금 1억 94백만원, 각종 감사결과 환수금 8천 7백만원 등에 따른 것임.

[표] 최근 5년간 그 외 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18	2017	2016	2015	2014
예산액	193,433	122,081	168,656	140,296	102,953
징수결정액	412,247	336,733	285,066	176,823	118,410
증감률	22.4%	18.1%	61.2%	49.3%	-

-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수납현황을 보면 과오납 및 정산 환급금, 각종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금의 수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을 지출 후 환급·환수하는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하겠음.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용자금회수수입은 예산액 22억 4천만원 대비 5억원(22.3%) 감소한 17억 4천만원이 징수결정되었는데,
 - 차액 발생사유는 만기 도래 일 이전에 중도 상환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3.16%인데 반해 2.16% 저렴한 1.0%로 지원되어 중도상환자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아래의 [표]에서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세입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겠음.

[표]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별	2018	2017	2016
예산액	2,240,108	2,688,000	2,591,000
징수결정액	1,740,000	2,045,000	2,296,000

다) 결손처분(결산서 p.37~41, p.130)

-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9건에 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사유 \ 과목	계	지난연도수입
결손처분	6,455	6,455
	(100%)	(100%)
배분금액부족	1,563	1,563
채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3,299	3,299
무재산	1,307	1,30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86	286

- 상기 [표]의 결손처분 중 지난연도수입이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기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고 결손처분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 단위로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미수납액 (결산서 p.37~41, p.132)

- 미수납액은 5천 2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 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사유	과목	계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52,863	264	17,267	35,332
		(100%)	(0.5%)	(32.7%)	(66.8%)
	무재산	4,796			4,796
	행방불명	10,930		2,587	8,343
	납세태만	23,502		12,289	11,213
	폐업 또는 부도	5,350			5,350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5,510			5,510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2,775	264	2,391	120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66.8%)과 과태료(32.7%)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 소방법 관련 위반 과태료 신규 부과처분시 적극적인 수납 독려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이 된 경우 법정 독촉기한을 준수하고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6개월 단위로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결손 처분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644,317	12,154	-	62 (-62)	2,415 (-2,415)	-	1,656,471	1,639,468	4,007	-	4,007	5	12,991 (0.8%)
일반 회계	816,073	-	-	-	-	-	816,073	816,073	-	-	-	-	- (0.0%)
특별 회계	828,244	12,154	-	62 (-62)	2,415 (-2,415)	-	840,398	823,395	4,007	-	4,007	5	12,991 (1.5%)

가) 개 요

-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160억 73백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8,403억 98백만원(순계예산⁷⁾)을 포함하여 총 1조 6,564억 71백만원(총계예산⁸⁾)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6,394억 68백만원이고 순계규모로 8,233억 95백만원임.

7)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8)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5%인 40억 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29억 91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 (불용액) (결산서 p.17~18, p.47~63)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전액 집행하였음.
-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29억 91백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금천소방서 신설’ 등 7건([표] 참고)임.

[표]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금천소방서 신설	28,791	26,474 (801)	1,516	5.3%
2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타운 건립	50,452	48,200 (1,875)	377	0.7%
3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8,225	7,934 (17)	274	3.3%
4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6,204	5,987	217	3.5%
5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 향상	1,916	1,459	457	23.9%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2,707	2,359	348	12.9%
7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운영	15,094	13,462 (857)	775	5.1%

-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재난 대응 및 금천구 지역의 재난현장 도착 5분 체계 확대에 신속

한 소방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7억 91백만 원 중 15억 16백만원(5.3%)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로는 금천소방서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대상자가 50여명에 달하여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액을 크게 줄임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한편으로는,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이 14억 42백만 원에 달하여 당초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이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예방업무 추진향상’ 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행정 업무 추진 및 시민생활 안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16백만 원 중 4억 57백만원(23.9%)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비 16억 84백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 간주

9) - 시설비 :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4억 4,212만원, 설계비 집행잔액 5,722만원
- 시설부대비 : 1,695만 원

처리¹⁰⁾ 되어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필요한 인력 93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및 국내여비 출장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표] 화재안전특별조사 월별 운영인력 현황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고
운영인력	79	88	87	85	88	86	513	평균 85명

- 실제 운영에서 월 평균 85명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 2억 73백만원과 국내여비 출장 예산 1억 7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 화재안전특별조사 요원은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발생 가능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인력으로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부된 예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출동지령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의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7백만원 중 3억 47백만원(12.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UHF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하기 위

10) 2018회계연도 제1회 추정에서 간주처리(2018.7.2)됨.

한 자산 및 물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3억 37백만원
과 사무관리비 9백만원, 공공운영비 1백만원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 디지털 무전기 전환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2018 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다편성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결산서 p.69)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¹¹⁾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보수 부족분 및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이전에 따라 부족한 집기류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표] 참고) 2건에 24억 15백만원을 총당하여 사용하였음.

[표] 2018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415,000	2,415,000		

11)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	소행정	방과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2,400,000	'18.12.27.	보수부족
	소행정	방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400,000		
2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5,000	'18.08.01.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이전으로 집기류예산 확보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는, 인력운영비 보수의 경우 '18회계연도 개시 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관련 규정이 개정¹²⁾되어 교대근무자 공동근무시간(출근자 20분 조기출근)을 인정함에 따라 개인별로 월 5시간의 초과근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 인건비관련 예산의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¹³⁾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2016~2018회계년도)에 걸쳐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표] 최근 3년간(2016~2018)간 인건비 관련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유

회계연도	전용일자	전용 및 변경 사유
2016년	2018.12.27.	위험근무수당 규정개정으로 등으로 인한 보수예산 미반영
2017년	2017.12.21.	인력증원, 직급상향 및 조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
2018년	2016.12.19.	해당연도 중 교대근무자 공동근무시간(20분/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함에 따라 수당 부족분 발생

12)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청훈령 제49호, 2018.7.10. 일부개정)

1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p.255 (65. 인건비예산 과소편성 반복 발생)

-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 및 규정의 변경 동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운영비 편성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 다음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의 경우는 민방위경보 통제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서울애니메이션센터)이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6층)로 이전함에 따른 사무용집기류 등 확보 예산을 전용하였음.
- 이는 당초에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이 2019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었으나 재건축 디자인 변경요청,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이전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당해연도(2018년)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였고 밝히고 있으나,
- 서울애니메이션 재건축 사업 변경계획이 2017. 11. 4일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민방위경보사무실 이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예산변경(결산서 p.71)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

호용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5건에 6천 2백만원([표] 참고)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표] 2018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61,641	61,641		
1	소행 정 방 과	금천소방서 신설	401-01 시설비	27,600		'18.08.23.	설계경제성 검토 심사위원수당 등 발생
	소행 정 방 과	금천소방서 신설	401-03 시설부대비		27,600		
2	소행 정 방 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201-01 사무관리비	2,941		'18.12.27.	소방사다리차 조작능력향상과정 위탁교육비 부족
	소행 정 방 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2,941		
3	현대 응 장 단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201-02 공공운영비	12,100		'18.11.27.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납부
	현대 응 장 단	소방안전지도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2,100		
4	서울종합 방 재 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1,000		'18.08.01.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이전비
	서울종합 방 재 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11,000		
5	서울종합 방 재 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000		'18.12.27.	공공요금 납부
	서울종합 방 재 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000		

- ‘금천소방서 신설’의 경우, 2천 8백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예산 편성 당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지 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음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사업에서 3백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천, 밀양화재를 계기로 고가·굴절사다리차 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과목이 개설(2018.04)되어 교육생들의 교육비(1인 451,000원, 34명) 부족액을 지급함에 따른 것임.
- 또한 ‘소방안전지도 운영 공공운영비’로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훈련 및 출동이 증가함¹⁴⁾에 따라 소방안전지도¹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족한 통신료의 지급을 위한 것이고,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무관리비는 1천 1백만원의 예산을 융통하였는데, 이는 앞서 전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과 관련해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 6층으로 이전해야함에 따라 부족한 이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마지막으로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8백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 3월에 구급단말기(모바일 전자정부 지원대상 단말기) 교체 및 음압구급차(2

14) 2017년 : 대응단계 13건, 불시훈련 552회, 화재출동 8,446건
 2018년 : 대응단계 18건, 불시훈련 864회, 화재출동 10,104건

15) 통신장비(308대)-테블릿PC 213대, 와이파이 연결 무선인터넷 장치(라우터 45대 및 에그 50대)/월 평균 30,000원

대), 오토바이 구급대(22대) 추가 배정에 따라 통신요금 추가 발생에 기인한 것인데,

-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없음.

바) 차년도 명시이월

- 차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¹⁶⁾(결산서 p.155~156)

-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03억 98백만원 대비 0.5%인 40억 7백만원([표]참고)을 사고이월 하였음.

16)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표]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이월사유
합계		110,516	4,007	2,945	3.6	
소방행정과	① 소방행정타운건립	50,452	1,875	377	3.7	토목, 조경공사 등 예산 이월
	② 금천소방서 신설	28,791	801	1,516	2.8	건물철거 공사비 이월
	③ 소방관서시설물유지보수(도봉119안전센터 이전용역)	8,225	18	274	0.2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사업 이월
안전지원과	④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7,953	455	3	5.7	특수병화복 등 납품지연
119특수구조단	⑤ 소방항공대 운영	15,095	858	775	5.7	신규도입헬기 조종사 보수교육 등 이월

- ‘소방행정타운 건립’은 열악한 소방교육훈련시설 개선과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한 서울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평구 진관동 부지¹⁷⁾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49억원을 투입하여 소방학교, 전문훈련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장기계속 사업으로, ([표] 참고)

[표] 소방행정타운 추진 계획

추진계획	사업대상	규모	예산
1단계 (’14 ~ ’18년)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6개동, 7개 시설 (연면적 25,175㎡)	2,210억 원 (부지매입비 1,523억원 포함)
2단계 (’18 ~ ’19년)	특수재난 전문교육훈련시설	4개동, 4개 훈련시설 (연면적 4,830㎡)	139억원

17) 부지면적 48,950㎡

- 2018년 예산현액 504억 52백만원 중 3.7%인 시설비 18억 75백만원이 사고이월 됨.
-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1단계 공사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토목), 조정공사 구간이 2단계 공사인 전문훈련시설, 종합운동장 등의 공사와 중첩되면서 공사 공정상 2단계 공사 준공 후에 중첩된 1단계 도로(토목), 조정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첩구간 공사 예산에 대하여 사고이월(18억 7,541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음.
- 또한,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최근 3년간 이월액 발생 현황을 보면, 2016회계연도 172억 78백만원(48.2%), 2017회계연도 99억 48백만원(18.1%), 2018회계연도 18억 75백만원(3.7%)으로 이월액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표] 참고)

[표]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 최근 3년간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이월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비고
합 계		141,433	29,101	413	20.6	
2018년도	사고이월	50,452	1,875	377	3.7	
2017년도	사고이월	55,112	9,948	17	18.1	
2016년도	사고(명시)이월	35,869	17,278	19	48.2	

-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장기계속 사업의 경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다양한 돌발변수 등 일부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으나,
 -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예산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금천소방서 신설’ 예산현액 287억 91백만원 중 2.8%인 8억 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 그 사유는 금천소방서 신설부지 인접 주민들의 건립반대 등 주민들의 갈등심화로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등이 지연됨에 따라 건물철거공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늦춰짐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소방관서시설물유지보수 예산의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용역’ 사업은 도봉소방서 본서와 근거리(0.6km)에 위치한 도봉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소방력 편중을 해소하고 노후 된 청사(사용연수 47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괄예산 82억 25백만원 중 동 용역비에 해당하는 1천 8백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을 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차장→공공청사)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련부서(서울시 주차계획과, 도봉구청 등)와 부지위치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의 이전예정지인 도봉산 공영주차장 내 부지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서 공용주차장 일부(990㎡)에 대한 사용 가능 회신¹⁸⁾을 받고 2017년 제6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¹⁹⁾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초 협의가 부실했거나 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력이 부족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은 화재현장에서 필수적인 방화복 등의 개인보호장비와 화재진압에 필요한 보조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53백만원 중 5.7%인 4억 55백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18) (주차계획과)-공용주차장 일부(990㎡) 이전부지 제공 가능 회신, 2017.08

19) 2017.11월

- 사고이월 사유는 1차 특수방화복 주문(1,000착)²⁰⁾과 2차 특수방화복 주문(340착)²¹⁾에서 계약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의뢰한 제작 원단성능시험의 내피발수도가 불합격되어 납품이 지연된 점과,
 - 화재진압 등 보조장비인 배터리유압콤비절단기 등 8종을 구매 의뢰하였으나, 계약업체에서 충전식 송배풍기 6대에 대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납품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 이처럼 납품과정에서 품질문제나 납품지연문제가 발생한 때는 보다 엄격한 검수과정을 통해 불량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소방항공대 운영’ 사업은 광역출동태세 구축을 위한 항공구조장비 보강, 신형 소방헬기 구매 및 적응훈련, 격납고 증축공사, 소방헬기 부품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억 95백만원 중 5.7%인 8억 58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사유는 신규도입 헬기가 2018. 12. 14일에야 인수되었고 헬기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비행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신규도입헬기 조종사 보수교육’과 ‘응급의료시스템 장착’ 등의 순차지연과 신규도입 헬기에 사용할 정비용

20) (주)진양에스엔피, 계약일 : 2018. 6.4.

21) (주)진양에스엔피, 계약일 : 2018.10.5.

공구 및 장비 등이 납품계약업체 사정으로 연내 납품이 어려
짐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복적인 사고
이월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 소방재난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실국
5	예산전용 의회보고 미이행	소방재난본부
65	인건비 예산 과소편성 반복 발생	소방재난본부

5.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례 제55조의3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고, 단서로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총 98건의 예산 전용 중, 39건은 예산전용이 발생한 분기에, 39건은 예산전용이 발생한 다음 분기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반면, 15건은 전용 발생이 지난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5건은 예산전용 이후 다음 분기까지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는 18년도에 예산전용 사업 5건 중 1건에서 의회 보고를 미준수한 것으로 비율로 보면 약 20% 수준임.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중 조례 위반 사업 현황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전용 승인일자	상임위 보고일자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2018-12-27	보고예정
2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2018-12-17	
3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2018-11-29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도시 서울추진	2018-09-06	
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보도방송 제작	2018-11-28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운영	2018-11-05	
7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헌책 보물섬 조성 - 시설비, 감리비 등 3건	2018-12-02	
8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도시 서울추진	2018-06-27	
9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8-12-27	
1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메르스 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018-12-18	
1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시비)	2018-11-06	
12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2018-07-20	
1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18-12-13	
14	도시공간개선단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2018-03-31	2019-06-19
1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8-02-23	2018-10-23
1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2018-02-13	2018-09-10
1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양재천, 홍제천 하천시설 보상	2018-07-09	2019-03-04
28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시사편찬	2018-01-30	2018-11-07

나. 시정권고

상위법령에서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실·국별로 예산 전용 보고 시점이 상이한 부분은 추후 제도적 준비를 통해서 보완할 것을 권고함.

65. 인건비예산 과소편성 반복 발생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 ~ 2018년 3년간 연속하여 연금부담금(304-01) 편성예산 중 일부를 과소편성된 보수(101-01)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연도별 전용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위험근무수당 규정개정으로 등으로 인한 보수예산 미반영
- 2017년: 인력증원, 직급상향 및 조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
- 2018년: 해당연도 중 교대근무자 공동근무시간(20분/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함에 따라 수당 부족분 발생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전용일자	증감액		예산편성액		집행잔액	
		연금부담금	보수	연금부담금	보수	연금부담금	보수
2018	2018.12.27.	△2,400	2,400	82,879	441,278	1,943	657
2017	2017.12.21.	△1,205	1,205	71,644	412,861	0	32
2016	2016.12.19.	△2,733	2,733	65,751	389,871	0	75

연금부담금의 경우 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액 등을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법정부담금(2018년은 보수의 8.5%), 퇴직금보전금, 재해보상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을 예산편성하는 절차를 거침. 따라서 연금부담금 예산액은 보수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퇴직 또는 재해보상사건 발생 시 총당할 예비비 성격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다른 예산항목으로 전용하기 부적당함.

나. 시정권고

소방재난본부는 인건비예산 편성시 규정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반영하는 한편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동원하여 기준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인건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행할 때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편성시기를 함께 결정할 것을 권고함.